

봉담 중흥S-클래스 ◀센트럴에듀▶ 특별공급(다자녀가구)

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안내

구분		내용
청약 자격	신청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구성원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학생시 및 수도권(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에 거주하고 있는 자 2. 만 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(태아 및 입양을 포함)을 둔 자 3.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,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
	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급기준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생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% 우선공급 2.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% 공급 -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쟁 발생 시 :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(연 월일 계산)이 많은 자
	유의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, 입양한 미성년자녀(전혼자녀)를 포함 하되,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-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(전혼 배우자의 자녀)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- 과거 특별공급 1회 사용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 할 수 없음 - 부적격 당첨 후 청약기록 소멸자로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- 소형·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<p>* 세대 내 2명 이상이 특별공급 중복신청이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자로 처리 및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선정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음</p>

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

평점요소	총 배점	배점기준		비고
		기준	점수	
미성년 자녀수 (1)	40	미성년 자녀 5명 이상	40	자녀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※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
		미성년 자녀 4명	35	
		미성년 자녀 3명	30	
영유아 자녀수 (2)	15	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	15	영유아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
		자녀 중 영유아 2명	10	
		자녀 중 영유아 1명	5	
세대구성 (3)	5	3세대 이상	5	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
		한부모 가족	5	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
무주택 기간 (4)	20	10년 이상	20	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
해당 사-도 거주기간 (5)	15	10년 이상	15	공급신청자가 성년자(만 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* 시는 광역사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사-도로 본다.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
입주자 저축가입기간 (6)	5	10년 이상	5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 기준으로 산정
계	100			

(1), (2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(이혼·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)에 한함)

(3) :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(3), (4) :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를 적용

(4), (5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(6) : 입주자저축 기입확인서로 확인

*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 월일 계산)이 많은 자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정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및 관계법률을 확인하시고,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관계법률의 변경이 있거나,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주택법」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이 우선 적용됩니다.